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배영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3 / 전송 733-9535-6

문서번호 시정01226-522

시행일자 1992. 9.

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 장
보존		시정연구관장 이경환
기획관리실장	전경	
시정개발담당관	박	
제도개선계장	김	
기안	이 광 환	
		협조

제목 19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계획

1.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'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.

- 첨부 1) 19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계획 1부
 2) 19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문(안) 1부 끝.

(제 2 안)

수신 홍보계획담당관

발신 시정개발담당관

제목 시보게재 의뢰

1. '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문을 시보를 통하여 공고코저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9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문 1부 끝



서울특별시

19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제도 운영계획

1. 목적 및 근거

가. 목 적

- 창의적인 의견.고안을 장려.계발하여 행정의 능률화, 경제화
- 공직사회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의 사기양양

나. 근 거

- 지방공무원법 제78조 (제안제도)
-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(규칙 제2223호, 88.5.7개정)

2. 제안의 모집

가. 모집기간 : 92. 9. 1 ~ 93. 7. 31

나.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대상

- 제안자의 자격 :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소속공무원

○ 제안자의 수

-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내역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○ 제안대상

- 행정능률 향상 방안
-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
- 에너지절약 방안
- 시민편익의 증진방안
- 기타 기계.설비.장치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사항

라.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

-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
-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
-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 -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,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
 -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 -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
- ※ 다만, 직무제안 또는 추천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고안이 제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제안자의 창의에 의해 해당된 때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.

마.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

○ 제안의 종류

- 자유제안 : 제안자가 과제를 자유로이 정하여 제출하는 제안
- 지정제안 : 서울특별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
- 직무제안 :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경우에 소속국장(사업소 포함)이 추천한 제안 다만 차치구공무원은 자치구에 제출
- 추천제안 : 자치구 제안규칙에 의하여 심사, 채택된 제안이거나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

○ 제출방법 및 접수

- 직접 또는 문서함, 우편이용 제안서 3부 제출
(자유, 지정제안서 서식1, 직무, 추천제안서 서식2)
-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증 교부 (서식3)
-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, 도안, 사진 등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
원본대조필

-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둘 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함.
-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음

바. 제안제도의 관장기관

- 국가행정사무에 관한사항 (법령의 개정사항 포함)은 중앙부처에 (판보제12157호 총무처공고제1992-14호 (1992.7.1) 참조)
- 자치구사무를 제외한 시정에 관한 사항(시장권한사항)은 시에
- 자치구사무에 관한사항(구청장 권한사항)은 자치구에 제출

3. 심사 및 채택

가. 심사시기 : 93. 11월중

나. 심사절차

-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
- 제안심사위원회 (위원장 - 기획관리실장)에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

다. 심사기준 : 창의성. 경제성. 능률성. 실용성. 적용범위. 계속성 및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

라. 채택기준 :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및 현저한 행정능률성

4. 시상 및 특전

○ 시상 : 채택자 전원 시장표창 및 부상금 지급

금 상	은 상	동 상	장 려 상	노 력 상
250 만원 이상	150 만원 이상	50 만원 이상	30 만원 이상	5 만원 이상
500 만원 이하	250 만원 미만	150 만원 미만	50 만원 미만	30 만원 미만

- 특 전 : 창안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부여

5. 창안의 권리승계

- 채택창안에 대한 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의 출원 및 등록권리는 서울시가 승계(제안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)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명의로 행사할 수 없음

6. 상여금 지급

-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
-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서울시가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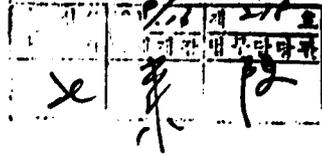
7.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

-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내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, 설비 또는 각종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

8. 기타 행정사항

- 현재 제안제도의 개선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위의 공고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(변경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통보할 예정임)
- 1993년도 제안제도운영지침은 따로 보내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규칙을 참조하기 바라며 자치구에서는 본계획을 참조 자체제안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.

Handwritten signature



서울특별시공고 제 111호

1993년도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공고(안)

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1993년도 서울특별시
공무원 제안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2년 9월 일

서울특별시장

1. 목적 및 근거

가. 목 적

- 창의적인 의견, 고안을 장려, 개발하여 행정의 능률화, 경제화
- 공직사회의 연구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의 사기양양

나. 근 거

- 지방공무원법 제78조(제안제도)
-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(규칙 제2223호, 88.5.7개정)

2. 제안의 모집

가. 모집기간 : 92. 9. 1 ~ 93. 7. 31

나.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대상

- 제안자의 자격 :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소속공무원
- 제안자의 수

-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
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각자의 업무분담내역 및 제안
에 기여한 공로도를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

○ 제안대상

- 행정능률 향상 방안
-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방안
- 에너지절약 방안
- 시민편익의 증진방안
- 기타 기계, 설비, 장치등의 발명 또는 개선에 관한사항

라.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

-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
-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
-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
-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, 진정, 비판,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
-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
-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

※ 다만, 직무제안 또는 추천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고안이 제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제안자의 창의에 의해 해당된 때에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.

마. 제안의 종류 및 제출방법

○ 제안의 종류

- 자유제안 : 제안자가 과제를 자유로이 정하여 제출하는 제안
- 지정제안 : 서울특별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
- 직무제안 :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경우에 소속국장(사업소 포함)이 추천한 제안 다만 자치구공무원은 자치구에 제출
- 추천제안 : 자치구 제안규칙에 의하여 심사, 채택된 제안이거나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한 제안

○ 제출방법 및 접수

- 직접 또는 문서함. 우편이용 제안서 3부 제출
(자유, 지정제안서 서식1, 직무.추천제안서 서식2)
- 제안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, 도안, 사진등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
-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둘이상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하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함.
-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음

바. 제안제도의 관장기관

- 국가행정사무에 관한사항 (법령의 개정사항 포함)은 중앙부처에(관보제12157호 총무처공고제1992-14호(1992.7.1) 참조)
- 자치구사무를 제외한 시정에 관한 사항(시장권한사항)은 시에
- 자치구사무에 관한사항(구청장 권한사항)은 자치구에 제출

3. 심사 및 채택

가. 심사시기 : 93. 11월중

나. 심사철자

-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실무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
- 제안심사위원회(위원장 - 기획관리실장)에서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

다. 심사기준 : 창의성. 경제성. 능률성. 실용성. 적용범위. 계속성 및 기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

라. 채택기준 :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 및 현저한 행정능률성

원본
대조
필

4. 시상 및 특전

○ 시상 : 채택자 전원 시장표창 및 부상금 지급

금 상	은 상	동 상	장 려 상	노 력 상
250만원 이상	150만원 이상	50만원 이상	30만원 이상	5만원 이상
500만원 이하	250만원 미만	150만원 미만	50만원 미만	30만원 미만

○ 특 전 : 창안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부여

5. 창안의 권리승계

○ 채택창안에 대한 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의 출원 및 등록권리는 서울시가 승계(제안규칙 제26조 내지 제30조)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 권리를 창안자의 명의로 행사할 수 없음

6. 상여금 지급

- 창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
-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여건변동으로 서울시가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9조에 따라 이를 보상한다.

7.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

○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내 보유하고 있는 자체시설, 설비 또는 각종자료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것

8. 기타 행정사항

- 현재 제안제도의 개선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위의 공고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(변경된 내용은 나중에 따로 통보할 예정임)
- 1993년도 제안제도운영지침은 따로 보내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제안규칙을 참조하기 바라며 청구에서는 본계획을 참조 자체제안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.

<별지제1호서식>

- 자유 제안서
- 지정

수신: 서울특별시

계 안 내 용	계 분 류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제도분야 <input type="checkbox"/> 과학기술분야		심 사 번 호	
	계 목				
	개 요				
	현 행 상 의 문 제 점				
	현 행 과 대 비	현 행	개 선		
효 과 전 감	산 감 액	국고또는조세 수입증대액	행정개선 효 과		

.....절취선

계 안 자	성 명	한 글		주 민 등 록		접 수 번 호	
		한 자		번 호			
	소 속		직 급		심 사 번 호		
	주 소				연 락 전 화 번 호		

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제 16조에 의거 자유 제안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①

- 첨부: 1. 제안내용설명서
 2. 경비전감 및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액 산출내역서
 3. 참고자료
 4. 직무제안추천서 (직무제안에 한함)



